

'98. 9월 공포된 개정실용신안법 특허법의 해설



서 천 석 / 특허청 심사조정과

1. 실용신안법 개정배경

1998년 9월은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제도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 달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우리나라에 특허 및 실용신안제도가 도입된지 정확히 90년만에 처음으로 정부는 특허제도의 대개혁을 통하여 국내 산업기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산업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실용신안제도를 채용키로 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998년 9월 2일 제196회를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9월 23일 대통령에 의해 정식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구한말 지식영선생 등 선각자

들이 특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자주적인 각성이 채 뿌리내리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제도는 일본에 의해 왜곡되어 도입되었다.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일본은 한국에서 미국인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08년 8월 12일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한국에 있어서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을 체결하였다. 동 조약에 따른 한국특허령에 의거, 같은해 8월 16일부터 당시 일본특허법이 한국에 '의용' 되었으며, 1910년 8월 29일부서는 한일합방에 의해 일본특허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시행되게 되었다.

해방후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1946년 특허법도 우리나라의 산

업기술 수준을 고려한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라 우리와는 산업기술의 수준 및 발전과정이 크게 다른 미국의 특허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새로이 정립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오늘날의 특허제도의 기본 골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일본 및 선진국의 제도를 일부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바람은 1980년대말 들어 불기 시작하였다. '소발명' 또는 간단한 개량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은 최근들어 기술혁신의 진전 및 가속화에 힘입어 출원후 극히 짧은 기간내에 사업화 또는 실시되고 있으며, 실용신안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또한 2~3년으로 크게 단축되어 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1990년대 들어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급증한데 비해 심사인력의 증원 및 특허정보의 전산화 등 심사인프라의 확충은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심사적체가 심화되었다.

1997년말 기준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미착수 물량만해도 약 30만건에 달하였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지연도 선진국(미국 17~19개월, 일본 24개월 소요)에 비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라이프사이클이 불과 2~3년에 불과한 '소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심사처리됨으로써 무려 3년가까이 소요된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부터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도입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낸 1996년 6월 동 제도의 도입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점차 단축되어가고 있는 실용신안의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개발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특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심사주의를 고수하되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선등록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II. 산업발전과정과 실용신안제도의 역할

특허제도의 운용과정에 있어서 나라에 따라서는 소위 '소발명'이 경시되어 특허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산업정책상 특허 '소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한다.

실용신안제도는 대개 이러한 사정이 있는 나라에서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채택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영국에 비해 산업혁명이 뒤진 독일은 1870년대 통일제국을 건설한 후 강력한 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때 채택된 것중의 하나가 바로 세계 최초의 실용신안제도이다.

독일은 실용신안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국민의 기술개발 의욕을 북돋아준 결과 이미 19세기 말에는 영국을 제치고 미국에 버금가는 공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은 1885년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당시 일본인의 기술수준은 낮은 편이었고 외국에서 도입한 기본기술의 모방내지 개량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산업정책상 특허 '소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장려할 수 있는 실용신안제

도를 따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05년 독일법을 일부 모방한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자국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소발명'을 보호·장려하는 부국강병책을 전개하여 20세기초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산업발전 과정에서 후발공업국이었던 세계 26개국이 실용신안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제각기 자국의 산업발전수준에 부합되는 독특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산업기술수준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내국인에 의한 실용신안출원이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소발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만 실용신안 제도의 주된 이용자가 되어야 할 중소·벤처기업들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80%, 독일의 50%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우리민족 고유의 높은 창의력을 일깨워 21세기 국가산업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III. 실용신안법 · 특허법 개정的主要内容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이번에 개정된 법률내용중 가장 특기할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실용신안제도를 『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대목이다. 즉 앞으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원주의 등 실제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서지적 사항에 관한 방식심사와 명세서 기재요건 등과 같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1997년말 36개월 소요되었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가 향후 2000년 특허출원은 약 24개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약 3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2. 실용신안 기술평가제도의 도입

한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제적 등록요건을 결여한 부실권리도 어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현행 심사주의하에서도 거절사정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등록실용신안권자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다른 사람을 침해함으로써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여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그 결과로서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술평가의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지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절사정불복심판’에 준하는 불복수단이 허용된다.

이것은 부실권리의 ‘발생’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지만, 부실권리의 ‘행사’는 선량한 풍속 및 공중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부는 ‘비용-편익’의 분석하에서 부실권리의 ‘발생’ 그 자체보다는 ‘행사’를 억제하는 제도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97년 11월 20일 제출한 바 있는 정부원안은 기술평가시 의견제출 내지 보정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술평가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감정서’

수준이었으므로 ‘부정적 기술평가’에 대해서도 불복수단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것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면에서 볼 때는 장점이라 하겠으나, 불안정한 권리관계가 장기간 유지되는 폐단이 있으며 기존의 ‘사정서’에 비해 ‘감정서’ 수준의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오는 심사관의 새로운 업무부담이 발행하는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개정법률에 최종 반영된 “현행 심사수준의 기술평가제도”이다. 정부는 심사관의 심사업무는 정부원안에 의한 ‘감정서’ 수준의 기술평가를 행할 때보다는 현행 ‘심사’ 수준의 기술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오히려 그 부담이 경감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감정서’ 수준의 기술평가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이 없으므로 심사관은 현행보다 오히려 자구 하나하나를 작성함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동 ‘감정서’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결과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심사관은 민·형사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심사관은 상급심판기관의 ‘Review’를 전제로 소신껏 사정하는 것이 주임무이므로 ‘감정서’ 수준보다는 현행 ‘심사’ 수준의 기술평가제도가 심사관에게는 부담이 덜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불복수단이 없는 ‘감정서’

‘수준의 기술평가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심사관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소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고려된 것이다.

3. 전자출원제도의 도입 (시행일 : 1999. 1. 1.)

개정법률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전자출원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국내 행정기관중 최초로 모든 행정서비스 절차를 컴퓨터 통신

망에 의해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8월 특허청이 대전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출원인 및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금년말까지 특허정보망(일명 KIPO-NET)의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자출원제도』를 시행코자 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출원인 등이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중간서류 또는 등록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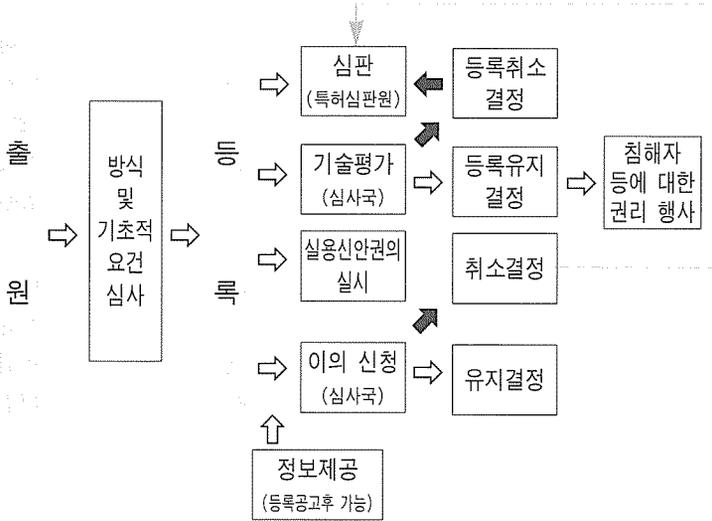
즉 출원인 등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특허청도 복잡한 종이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대신 전자서류의 형식으로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실현을 촉진하였다.

4. PCT 관련제도의 개선 (시행일 : 1999. 5. 1.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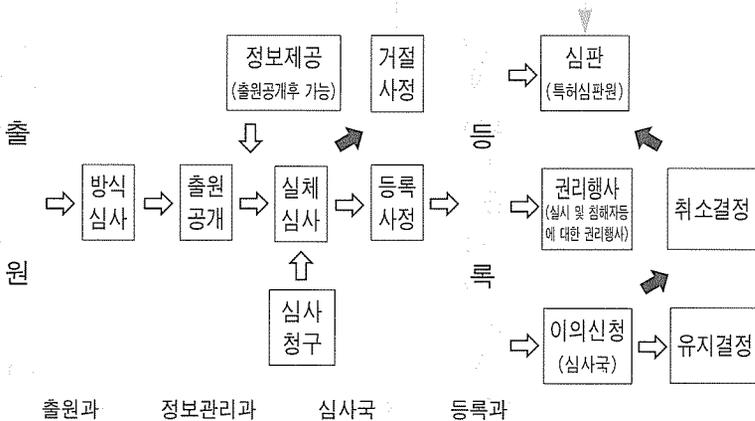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멕시코 등 세계 여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우리나라

〈실용신안 선등록·후기술평가제도의 업무흐름 비교도〉

가. (개정) 실용신안제도의 업무흐름도



나. 현행 실용신안제도 업무흐름도



라 특허청에 한번 특허출원함으로써 자기가 지정한 다른 모든나라 특허청에도 특허출원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출원해야 이러한 혜택을 거둘 수 있었다.

금번 개정법률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어를 삭제하는 대신 '국어'를 국제출원언어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사람들도 PCT 출원을 위하여 미리 영어 또는 일본어로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국어로 된 출원서를 PCT출원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현재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국제출원 활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번 개정법률에서는 한국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조약사무국과의 협약을 거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우리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국어에 의한 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 작성, 영어에 의한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을 잘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5.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개선 (시행일 : 1999. 1. 1.)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를 국제동향에 맞추어 개선하였는 바, 의약 및 농약 등에 관한 발명과 같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리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재는 당해 시험으로 인하여 '2년 이상'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험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우리의 현행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내년중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년 이상 불실시'의 하한선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6. 이중출원제도의 도입 (시행일 : 1999. 7.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이중출원제도』를 채택하였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이라는 커다란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실용신안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이 장기인 특허

로 출원중인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실용신안을 부여받아 권리행사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 것이다.

다만 권리의 이중등록(double patenting)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으로 출원하여 먼저(약 3개월후)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특허사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아니면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그냥 실용신안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7. 특허소송부가기간제도의 도입 (시행일 : 1999. 1. 1.)

특허소송부가기간제도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소기간 30일에 부가하여 심판장이 재량으로 일정기간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들면, 민사소송법 제160조에서는 "주소 또는 거소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특허법 제178조 제5항에서도 상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우리의 경우도 동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특허소송

의 당사자중 외국인이 34% (1996년), 41.9%(1997년 1월~10월; 법원통계연보)에 달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8. 실용신안권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일 : 1999. 7. 1.)

현행 심사주의하에서는 정부가 일응 완벽한 심사를 행한 후에 권리를 부여하므로 그 권리 또한 일응 완벽한(즉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자에게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에 의해 추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의 침해혐의자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무효라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항변을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실권리의 발생은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무작정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정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실용신안권의 '정당한' 행사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개정법률에서는 "실용신안권자는 침해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

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입증책임전환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즉 권리행사후 무효·취소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자로부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자신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용신안권이 현재에 비해 강화되는 것은 실용신안제도 이용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기 대전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었다.

"다만, 기술평가에 다른 등록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가 기술평가의 결과 특허청으로부터 발부받은 등록유지결정서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입증책임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9. 실용신안 심판처리의 신속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어느정도 발생이 예상될 수 있는 부실권리는 비록 사후적 기술평가제도에 의해 일정부분 등록취소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진정한 권리인가 여부에 관한 다툼이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이 2~3년에 불과한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절차의 신속화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특허권에 관한 특허심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은 그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종래에는 제2항에 "다만,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금번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그 만큼 심판업무의 처리가 신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현행제도하에서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가능성

1999년 7월 1일 현재 기존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는 기존 규정에 의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개정법률 즉 선등록제도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1993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비교표〉

| 구 분 | 현행 제도 | 개정 제도 | 비 고 | |
|------------------|---------------------|-----------------------|--|---|
| 실용 신안 법 | 1. 제도특성 | 심사주의 | 무심사주의(선등록, 후기술평가제도) | 심사처리/권리등록기간 단축(3년→3개월) |
| | 2.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한함 | ≡ 좌동 | 이중출원제도의 채택으로 보호대상 확대 여부는 추구검토 예정 |
| | 3. 권리부여절차 | 방식심사, 실체심사후 등록하여 | 방식심사, 기초적 요건심사후 등록 | 실체적 등록요건은 기술평가 단계에서 시행 |
| | 4. 심사/기술 평가 청구제도 | (사전) 심사청구제도 | (사후) 기술평가청구제도 | 등록후 타인에게 권리행사시 기술평가 청구 |
| | 5. 사정/결정의 효력 | 행정처분의 성격 | ≡ 좌동 | 정부원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감정서'였음 |
| | 6. 무효, 취소시 권리행사의 책임 | (별도규정 없음)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 다만 등록유지결정서에 근거한 경우 책임 면제 | 부실권리의 행사가능성을 최대한 억제 하기 위해 『등록유지결정서』제시의 무효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과 |
| | 7. 권리행사 전제 요건 | 등록사정에 따른 권리의 설정 등록 | 기술평가의 결과 발부받은 등록유지 결정서 제시 | 부실권리의 행사 방지 |
| | 8.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5년 | 출원일부터 10년 | 선등록 권리임을 감안하여 존속기간 단축 |
| | 9. 이의신청 | 있음(등록공고후 3개월내 제기) | ≡ 좌동 | 기술평가제도와 중복되므로 추후검토 필요 |
| | 10. 정보신청 | 있음(출원공고후 등록공고전) | 있음(등록공고후) | 기술평가제도와 배치되므로 추후검토 필요 |
| | 11. 불복제도 |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소송 인정 | ≡ 좌동 |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심판 허용 |
| 특 허 사 항 | 12. 이중출원 허용 여부 | 이중 출원 불인정 (변경출원제도 채택) | 이중출원 허용(변경출원 불채택) | 특허출원과 병행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허용 |
| | 13. 전자출원제도 | 서면주의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자문서의 제출 허용 | '종이' 외에도 컴퓨터디스켓, 통신망 이용 가능 |
| | 14. PCT 언어 | 영어, 일어 | 영어, 국어 | 국어로 국제출원 가능 |
| | 15. PCT 기관 | 수리관청, 지정관청 |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 추가 |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역할 수행 |
| | 16. 특허소송 부가 기간제도 | 불인정 | 인정 | 원격지 거주자를 위해 심판장 제량으로 하여 |
| 특 허 법 | 17. 존속기간 연장 제도 | 불 실시 하한선(2년) 있음 | 하한선 폐지 | 의약품등 시험으로 인한 불실시기간이 2년이하인 때에도 연장가능 |

되어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IV. 맺음말

정부는 장기간 산업정책 및 특허정책적 차원에서 연구·검토한 끝에 실용신안 선등록·후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만에 하나 발생할 지 모르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심사처리지침 등을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신제도의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은 보다 손쉽게 특허제도를 이용

할 수 있게 된 면은 있으나, 자신의 출원 내용에 대해 현재보다는 완벽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즉 일단 출원하게 되면 간단한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곧바로 등록되므로 과거와는 달리 실수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약되므로, 출원인은 사전에 충분히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자신의 기술개발 결과중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또는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이를 청구범위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하여 지난 7개년 동안 구축해 온 특허온라인 정보검색망을 금년말 완료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기존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제도는 '심사주의'를 고수하는 특허제도와 '무심사·선등록주의'의 원칙을 도입한 실용신안제도로 확연히 구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결국 최종 수요자인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에게 얼마나 간편하고 유익하게 다가가는가에 의해 최종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금번의 대개혁이 산업기술계에 실질적으로 접목되어 기업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동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현안과제인 IMF사태의 극복은 물론 21세기 기술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정부, 기업체 특허업계 모두의 적극 매진을 기대해 본다.

